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자. 판결(2005가단18300)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김승곤 판사) 재판부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하 원고)이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와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소속 기사가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기사는 곧바로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

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원고가 이명박 시장에 대하여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이를 그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엔에이치엔이 자신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

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피고 엔에이치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 엔에이치엔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18300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여 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 회관 81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 아
 피 고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빌딩
 대표이사 김 범 수
 2.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대표이사 이 정 식, 정 남 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 명
 담당변호사 박 중 운, 김 민 정
 변 론 종 결 : 2006. 8. 25.
 판 결 선 고 : 2006. 9. 8.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고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 간의 기사 및 정보제공 체계

(1)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4. 9. 30.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사이에 네이버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씨비에스아이로부터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작성한 기사를 제공받고 있었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노컷뉴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컷뉴스팀의 기자가 씨비에스 노컷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내지 정보를 등록하면 노컷뉴스팀이 편집을 한 후 이를 씨비에스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씨비에스 서버에 저장된 기사와 정보는 다시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피고 엔에이치엔이 운영하는 서버에 그대로 전송된다.

(3) 피고 엔에이치엔은 피고 씨비에스로부터 전송

받은 기사와 정보를 '네이버'에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되 기사제목만을 기사 내용에서 뽑아 링크를 걸어 이용자들이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와 정보의 내용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4)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1. 31.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 시 반드시 피고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뉴스팀 대표메일로 요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오보(誤報)의 작성 및 게재 경위

(1)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송○○ 기자는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욱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2) 위 나.항에 따라 위 기사가 같은 날 18:50경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었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같은 날 19:00경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욱,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3) 위 기사가 게재된 지 50여분이 지나 씨비에스의 청취자로부터 기사가 잘못 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씨비에스 측에 왔고,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같은 날 19:51경 위 기사 중 ‘전여욱 대변인’ 부분을 ‘김현미 대변인’으로 수정하였으며,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도 자동으로 수정되었다.

(4)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위 기사가 수정되었으면 나.(4)항에 따라 이메일로 수정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엔에이치엔에 즉시 이메일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고 엔에이치엔에 통보를 함에 따라, 제목은 같은 날 21:30경에 이르러서야 수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원고가 이명박 시장에 대하여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이를 그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기사작성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네이버가 최대 포털사이트로서 이 사건 기사가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큰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다만, 피고들이 고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작성 후 50여 분이 지나 곧바로 내용을 수정한 점, 기사 수정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위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승 곤



판결 2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일명 ‘안기부 X 파일’에 등장한 화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가 보인 보도행태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 자(2005가단5955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김도현 판사) 재판부는 조선일보(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2005. 7. 29. 「뉴스플러스 앰니움 니」 프로그램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넥션』 제하

의 보도를 통해 “일명 ‘안기부 X 파일’ 내용을 보도하면서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에 관해 원고가 보도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 방송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안기부 X 파일’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로 단정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악의적 태도를 가지고 원고에 관한 사항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59554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2. 윤 ○ ○

3. 서 ○ ○

피고 2, 3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문화방송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변 론 종 결 : 2006. 8. 23.

판 결 선 고 : 2006. 9. 27.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MBC’라는 매체명으로 전국 일원을 그 방송권역 및 가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고 윤○○, 서○○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들로 2005. 7. 29.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를 진행한 사람들이다.

(2)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는 일주일에 1회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특정사건에 대한 신문, 방송 등 여러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비평을 하는 이른바 매체비평프로그램이다.

(3) 피고 회사는 2005. 7. 29. 22:55경부터 23:45경

까지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소위 ‘안기부 X 파일’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언론과 재벌, 그리고 권력의 유착관계를 방영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방영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행매체인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보도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근거로 삼은 X 파일의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고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고를 “스스로 권력화하는 무소불위의 매체”라는 등으로 모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방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말미암아 대외적 신용이 크게 실추되고 그 업무를 방해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건전한 매체비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방송내용

과 같이 원고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고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부각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

(2) 설사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위법하지 않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그 내용

(1) 피고 회사 소속의 이○○ 기자가 확보한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와 그 녹취록(소위 ‘X 파일’)의 내용이 2005. 6.경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던 홍석현과 삼성그룹 비서실장인 이학수 사이에 오고 간 각 대선 후보자들의 근황과 삼성그룹의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문제 등에 관한 대화들이다.

(2) 원고는 2005. 7. 22.과 7. 24. 조선일보의 사실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와 더불어 X 파일의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가, 중앙일보가 2005. 7. 25. 1면과 3면 기사를 통해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 ‘조선·동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역겨워’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원고)와 동아일보도 그 임원들의 대화내용이 도청되어 그 치부가 다 알려졌으니, 중앙일보에 초상이 났다고 좋아서 그러지 마라, 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전 안기부 도청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X 파일의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국정원의 불법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2005. 7. 27.부터는 X 파일 사건의 초점을 중앙일보와 같이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맞추어 보도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이 X 파일 사건의 본질을 자본, 언론 그리고 권력 사이의 유착 내지 야합에 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두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고 2005. 7. 29.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에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선후보자에 대한 삼성의 정치자금 전달 문제, 중앙일보의 당시 신한국당(뒤에 '한나라당'으로 당명 변경) 이회창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 보도 문제 등을 다루다가, 이어 X 파일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 오고 간 원고 관련 대화내용, 즉 '조선일보 방 씨 일가가 모여 차기대통령 문제를 논의한 끝에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기로 결론을 내고 이를 위해 김대중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인 건강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함. 조선일보 기자들이 김대중 후보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야간 잠복근무를 하고 있고, CT 촬영결과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10월 21일경 주간조선이나 월간조선을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터뜨릴 예정임'이라는 홍석현의 말을 근거로, 원고도 1997년 대선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권력 만들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홍석현의 대화내용대로 1997. 10. 20. 자 조선일보, 1997. 11. 20. 자 주간조선, 1997년 12월 호 월간조선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에 대한 건강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방송하였다.

② 그리고 계속하여 1997년 대선 당시 원고 및 중앙일보와 신한국당 사이의 우호적 관계, 원고와 중앙일보의 반 김대중 친 이회창 성향, 1992년과 2002년 대선에서의 원고와 중앙일보의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태도 등을 통해 원고와 중앙일보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당과 유착관

계를 맺고 그 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보도의 원칙을 포기하였고, 스스로 권력화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③ 이어 X 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X 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의 불법성으로 몰아가고 있고, 원고와 동아일보도 당초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돌아서 중앙일보와 같이 X 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도청의 문제로 바꾸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회사, SBS, 문화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X 파일 내용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다는 내용을 방송한 뒤, "거대재벌의 부도덕한 면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들. 재벌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가 바로 독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라는 피고 윤○○의 말을 끝으로 이 사건 방송을 마무리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전에 위와 같은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의 대선관련 보도 내용과 그 성향

(1) 원고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행매체인 조선일보를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10여 회 걸쳐 거론하였는데, 주로 상대방인 한나라당 선거관계자의 발언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등을 보도한 것이었고, 원고 이외의 대부분의 언론도 당시 각 당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나오는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1997. 10. 20. 자 '대선후보들 건강과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총재 등산, 이 총재 축구, 이 전(前) 지사는 춘천마라톤 참가신청'이라

는 소재목을 달아 김대중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를 보도하면서, 김대중 후보에 관해서만은 소재목 없이 그 기사 말미에 '산책과 맨손체조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1997. 10. 25. 자 '대정부 질문 초점'이라는 기사에서는 다른 신문들이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비자금 수사 연기 문제와 함께 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신한국당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을 보도한 것과 달리 김대중 후보의 건강과 비자금 수사 연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2) 원고는 1997. 11. 20. 자 주간조선의 '경쟁후보가 보는 강점과 약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신한국당, 국민의회, 국민신당 등 3당에서 선정한 선거기획 핵심인사 2인이 들고 있는 상대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보도하였는데, 주로 이회창 후보에 대하여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김대중 후보에 대하여는 건강문제가, 이인제 후보에 대하여는 경선불복 문제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다는 내용이었다.

(3) 원고는 1997년 12월호 월간조선의 '대선 3후보 최대약점 집중추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에 관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건강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인 취재를 하여 보도하였는데, 김대중 후보와 관련된 내용 중에는 '입수한 처방전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가 당뇨치료제 두 가지(유글루콘과 글루코바이), 혈압강하제 한 가지(스프렌딜), 콜레스테롤 치료제 두 가지(리판틸과 메바코드), 통풍치료제 한 가지(자이로릭) 등 여섯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4) 한편, 원고와 중앙일보는 1997년 대선 당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신한국당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선 상황을 이회창과 김대중의 양자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등 선거 상황을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하면서도, 그 상대방인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색깔론, 반DJP연대, 비자금 폭로 등으로 공격하고,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는 대선 상황이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 것처럼 편파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고, 근거 없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국민신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편파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당시 위와 같은 원고와 중앙일보의 편향보도로 인해 원고와 중앙일보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3, 5 내지 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 단

가.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

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은 X 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우선시하는 피고들과 달리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정원의 불법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러한 원고와 중앙일보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원고 및 중앙일보와 재벌 및 특정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유착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행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내용, 그리고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민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언론사인 점,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에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지난 대선에서의 보도행태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X 파일 사건과 관련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갑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와 중앙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

을 '추악한 커넥션의 당사자, 권력과 언론의 검은 커넥션, 독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신문, 스스로 권력화하는 무소불위의 매체,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보도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부도덕한 권언유착, 그 부정의 뿌리, 신문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사의 이익, 혹은 재벌의 권력' 등으로, 원고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정권과 문민정권 창출 과정에서 대통령 메이커의 역할을 자임한 조선'으로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원고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거나, 그것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 여부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의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홍석현은 국민의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굴지의 언론사인 중앙일보의 사장인 점, 그 대화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복용하고 있다는 약의 이름까지 보도한 1997년 12월호 월간조선의 내용과 홍석현의 대화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점, 원고와 중앙일보가 19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근거한 이 사건 방송 중 원고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들

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

다.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조각

결국,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

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허위의 내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 사 김 도 현

